

## 파 주 시

수신자 하천 불법점용 행위자 귀하  
(경유)

###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(의견제출통지)

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예정된 처분의 제목	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					
당사자	성명(명칭)	미상				
	주소	미상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1. 처분원인 : 「하천법」 제33조(하천의 점용허가 등)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국가·지방하천 구역 내 불법 경작 및 불법 물건 적치 2. 위반내용 가. 위 치 : 위치도 참조 나. 행위내용 : 국가·지방하천 구역 내 불법 경작 및 불법 물건 적치 다. 행위상세 : 위치도 및 현장사진 참조	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원상회복 명령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「하천법」 제33조(하천의 점용허가 등), 「하천법」 제69조(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)					
의견제출	기관명	파주시	부서명	하천관리과	담당자	문채혁
	제출처	주소	경기도 파주시 소리천로 111, 2층		전화번호	031-940-5063
		전자우편 주소	hyuk1027@korea.kr		팩스번호	031-940-5059
	제출기한	2026년 5월 15일까지				

#### <의견제출 시 유의사항>

-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·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,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,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.
-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파 주 시

